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52

발의연월일: 2021. 7. 26.

발 의 자:유동수·김민철·서영교

양정숙 • 허종식 • 류호정

강병원 · 조오섭 · 유정주

송재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고있음.

그러나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사의 단서 · 상습성 판 단자료 · 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 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.

이는 헌법 제17조 · 제10조에 근거를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,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'주홍글씨' 낙인이 우려됨.

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소년부송치된 사건이 불처 분결정될 경우,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함.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(헌재 2021. 06. 24. 선고, 2018헌가2).

이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하는 것임(안제8조의2제1항제5호, 제8조의2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경우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·제2호의 불송치결정·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판결·결정의 확정 당시「소년법」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5. 제1항 제5호의 불처분 결정: 그 결정일부터 1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수사경력자료의 정리)	제8조의2(수사경력자료의 정리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
	부송치 사건의 경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
1호·제2호의 불송치결정·불기소	1호・제2호의 불송치결정・불
<u>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·</u>	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
제4호의 판결·결정의 확정 당시	3호부터 제5호까지의 판결・결
「소년법」 제2조에 따른 소년	정의 확정 당시 「소년법」 제2
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	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
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	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
<u>다</u> .	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제1항제5호의 불처분 결정:
	그 결정일부터 1년